

II. PL : 사실상의 추정

글·서병우 대표이사 동아전기공업(주)

추정(推定)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법률의 힘으로써 확정하고,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부부의 어느 편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재산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사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를테면 부(夫) 또는 처(妻)의 단독 소유를 증명하거나 반증(反證)하려면, 추정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간주하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또 소송법상에서는 간접사실이 존재한다는 입증에 의하여 직접 사실의 존재가 추측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직접 사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를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하며, 상대방은 본증(本證)에 의하여 이것을 번복시킨다. 그래서 반증에 의하여서나 반복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擬制)이고, 실제법상의 요건의 변경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정이 현상태로 계속 된다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다. 이 경우에 상속권은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한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의 출현, 상속결격(缺格) 혹은 폐제(廢制)에 의하여 상실되는 불확정한 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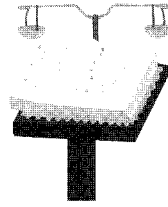
기대권(期待權)은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

면 일정한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준다고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험자는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대가 있고, 이 기대는 일종의 권리로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준다고 약속한 자가 수험을 방해하면 수험자가 합격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수험자는 10만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기대권이라 하더라도 권리로서의 보호가 극히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권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事實)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한다. 철학에서는 자연계의 현상으로서 필연적으로 있는 일과 가능성으로서 있는 일이다.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변경이나 소멸이 생기는 원인을 이루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법률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내용의 실제(實體)관계를 말한다.

의제(擬制)는 본질(本質)은 다른 것인데, 겉으로 동일한 것처럼 꾸미는 일이다. 법률에서 의제(legal fiction)는 서로 다른 사실을 법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일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이라고 간주하거나, 전기(電氣)를 유체물(有體物)로 간주하는 따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제상인(擬制商人)이란 상행위(商行爲)를 업으로 하지는 않으나 법률상 상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상인적인 설비에 의해서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광업(鑛業)을 영위하는 자, 민사회사(民事會社)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의제자본(資本 : watered capital)은 현실의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고 장래에 수익을 낳게 할 원천으로서의 자본이다. 즉 주식(株式)이 액면(額面)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 매매가격에 따라 계산된 자본이다.

주권(株券)·공사채·지가(地價) 따위인데, 가장(假裝)자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의제자백(自白)은 민사소송법상 구두변론(口頭辯論)이나 준비절차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인데, 추정자백(推定自白)이라고도 한다. 또한 의제적 선점(擬制的 先占)이 있는데, 국제법으로 실효성이 없는 선점이다. 연안 일대에 대한 선점이 그 배후지(背後地)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사상은 실효적인 선점에 대해 가장적인 선점임으로, 일명 가장적 선점(假裝的 先占)이라고도 부른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입각한 사실상의 추정(presumption of fact)이 있다.

웹스터(Webster) 사전에서는 presumption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the inference that a fact exists, based on the proved existence of other facts

법률상 추정은 보통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반증(反證)이 없는 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유지시켜 둔다는 뜻이다. 반증을 들면 추정된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제(擬制)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결합이다. 우리나라의 PL법에서의 결합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나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합을 지칭한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foreseeable)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의 제조상의 결합이 있고, 설계상의 결합은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고, 표시상의 결합이라 하여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지시 또는 예견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의 결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타 PL법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제국에서의 최근 법원판례의 경향은 결합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presumption of fact)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